

세종특별자치시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위원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 안 이 유

○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보도블록을 정비·유지관리하고 파손을 예방하며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목적 (안 제1조)
- 나. 정의 (안 제2조) : “보도”, “보도블록”, “보도공사”
- 다.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라. 보도블록 보호조치, 신고 및 접수체계 (안 제4조~제5조)
- 마. 보도블록 파손 시 조치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보도블록을 정비·유지관리하고 파손을 예방하며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시설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하여 보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블록의 파손을 예방하고 보도블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보도블록 보호조치) ① 시장은 보도공사나 그 밖의 작업 등을 위하여 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보도를 이용함으로써 보도블록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협의 과정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의 시행자에게 보호판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블록의 파손을 예방하고 파손 원인과 원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전·후의 보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신고 및 접수체계) 시장은 보도블록 파손 우려가 있는 공사·작업에 대한 신고 및 민원 접수를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접수창구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보도블록 파손 시 조치) 시장은 보도공사나 그 밖의 작업 등으로 보도블록이 파손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복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공사나 그 밖의 작업 등으로 보도블록이 파손된 경우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도로법

-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⑤~⑥ (생략)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김창연